

天然資源國際協定全文

UNCTAD

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UNCTAD)가 1976年 第4回 나이로비 總會以後, 推進해온 一次產品 綜合計劃 중 天然고무에 關한 交涉은 79年 10月初에 整理되어 正式으로 天然고무 商品協定이 發足하게 되었다.

同協定은 80年 1~6月間에 제네바에서 各國이 署名하고, 7~9月에 各國에서 批准하여 10月에 發足될 展望이다. 緩衝在庫를 中心으로 한 同協定은 UNCTAD의 18個品目의 協定 중, 經濟條項과 義務分擔을 骨字로 한 協定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注目되고 있다. 同協定은 天然고무價格의 安定과 供給安定을 目的으로 한 것이나, 同協定이 發效되더라도 現在에는 最高價格인 270 싱가포르센트 以上으로 되어 있으므로 當分間은 아무런 效果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業界에서는, 「天然고무價格이 安定되는 것은 歡迎하고 있으나 高價安定으로(朱錫協定과 같아) 될 두려움마저 있다」고 評하고 있으며, 原材料昂騰에 苦心하고 있다. 全文 68條로 된 天然고무 國際協定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前 文

契約當事國들은 「新國際經濟秩序確立宣言 및 行動計劃」*을 想起하고 특히 商品統合計劃에 關한 UNCTAD 第4次會議에서 採擇된 決議案 93(IV) 및 第5次會議에서 採擇된 決議案 124(V)의 重要性을 考慮하고 또 天然고무의 會員國經濟에 미치는 重要性 특히 輸出國에서의 輸出, 輸入國에서의 供給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나아가서 天然고무 生產者, 消費者 및 市場을 위하여 天然고무의 價格安定을 圖謀하고, 國際天然고무協定을 締結함으로써 生產者, 消費者를 위하여 天然고무 產業이 發展하고 充分히 成長되리라는 것을 認識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第1條 「目的」

商品統合計劃에 關한 UNCTAD 決議案 93(IV) 및 124(V)의 規定에 關聯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國際天然고무協定(1979年)(以下 本協定이라함)의 目的是 다음과 같다.

① 天然고무 需要供給의 均衡된 成長을 이룩함으로써 天然고무의 過剩 또는 不足으로 야기되는 困難性을 緩和한다.

② 生產者와 消費者의 長期的利益을 沢害하는 지나친 價格變動을 避함으로써 天然고무交易條件를 安定시키고, 長期의으로 市場趨勢를 是正하고 價格을 安定시켜 生產者와 消費者의 利益을 圖謀한다.

③ 輸出會員國의 天然고무 輸出收益을 安定시

* 1974年 5月1日 國聯總會決議 3201 (S-VI) 및 3202 (S-VI)

키고, 正當한 價格으로 輸出量을 擴大시켜 輸出國의 利益을 增加시킴으로써 生產 및 資源開發의大幅增强에 必要한 刺戟을 주어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을 助成한다.

④ 公正하고 適正한 價格으로 輸入會員國의 天然고무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天然고무의 安定供給을 確保한다.

⑤ 天然고무의 過剩 또는 不足現象이 생겼을 때에는 會員國이 當面하는 經濟的 困難을 緩和시키기 위하여 適切한 對策을 講究한다.

⑥ 天然고무 및 그 加工品市場의 國際貿易을 擴大시키고, 同市場加入을 促進한다.

⑦ 天然고무의 諸問題에 관한 調查 및 開發을 促進함으로써 天然고무業界의 競合을 改善한다.

⑧ 天然고무의 加工, 商品化 및 流通過程을 改善, 促進하여 天然고무 經濟의 效率의in 發展을 장려한다.

⑨ 天然고무의 需要供給에 影響을 미치는 諸問題解決을 위하여 國際的인 協助 및 協議를 더욱 推進하고 天然고무에 관한 技術研究, 支援 및 其他 計劃의 推進, 協助를 장려한다.

第2條 「定義」

1. 「天然고무」란 固體나 또는 液體의 非加黃elastomer로서, Hevea brasiliensis 및 理事會가 本協定의 目的을 위하여 指定한 其他植物에서 採取한 것을 意味한다.

2. 「契約當事國」이란 本協定의 義務規定에 對하여 暫定的 또는 最終的으로 同意한 第5條에 規定된 政府 또는 政府機關을 意味한다.

3. 「會員國」이란 本條 第2項에 規定된 契約當事國을 意味한다.

4. 「輸出會員國」이란 天然고무를 輸出하고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輸出會員國임을 宣言한 나라를 意味한다.

5. 「輸入會員國」이란 天然고무를 輸入하고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輸入會員國임을 宣言한 나라를 意味한다.

6. 「機構」란 第3條에 規定된 國際天然고무機構을 意味한다.

7. 「理事會」란 第6條에 規定된 國際天然고무

理事會를 意味한다.

8. 「天然고무의 輸出」이란 어느 會員國의 稅關領域에서 出荷된 天然고무를 意味하며, 「天然고무의 輸入」이란 어느 會員國의 稅關領域으로 入荷된 天然고무를 意味한다. 단, 本定義上 稅關領域은 同會員國이 1個以上의 稅關領域을 包含하는 경우에는 同會員國의 全稅關領域을 合한 것으로 看做한다.

9. 「特別投票」란 「輸出會員國」出席 · 投票한 投票數 중 最小限 3分의 2 以上과 輸入會員國이 出席 · 投票한 投票數 중 最小限 3分의 2 以上(別個로 集計함)을 要하는 投票를 意味한다. 단, 投票는 輸出入會員國의 각각 過半數의 出席 · 投票時에만 有效하다.

10. 「單純過半數得票」란 出席 · 投票한 輸出會員國의 總投票數의 半數 以上과 出席 · 投票한 輸入會員國의 總投票數의 半數 以上(別個로 集計함)을 要하는 得票를 意味한다.

11. 「會計年度」란 1月 1日부터 12月 31일까지 (1日 및 31일包含)를 意味한다.

12. 「톤」은 미터法의 1톤, 즉 1,000 킬로그램을 意味한다.

13. 「發效」란 本協定이 第60條에 따라 暫定的 또는 最終的으로 發效되는 日字를 意味한다.

14. 「말레이지아/싱가포르 센트」란 現行換率에 따른 말레이지아 센트와 싱가포르 센트의 平均 센트值를 意味한다.

15. 「自由使用通貨」란 美國 달러, 日本 円, 獨逸 마르크, 英國 파운드, 프랑스 프랑을 意味한다.

16. 「政府保證」이란 理事會에 對한 負債로서, 會員國이 緊急緩衝在庫의 財政保證으로 理事會에 對해 約束한 財政義務를 意味하며, 理事會는 第27條에 따른 理事會의 財政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上記財政義務의 履行을 要求할 수 있다. 따라서 會員國은 本理事會에 對해서만 自身의 保證額限度까지는 債還義務를 진다.

17. 「會員國의 年限加重 純分擔金」이란 會員國이 本機構에서 會員資格을 누린 年數에 따라 加重值가 붙은 純分擔金을 意味한다.

第3條 「國際天然卫旱機構의 設立, 本部 및 機構」

1. 本協定의 諸規定을 執行하고 그 施行을 管理하기 위하여 國際天然卫旱機構를 設立한다.
2. 本機構는 國際天然卫旱理事會, 同理事會의 理事 및 職員, 其他 本協定에 規定된 機關을 通過하여 그 機能을 遂行한다.
3. 理事會는 첫 會議에서 「特別投票」로 本機構의 本部를 련던 또는 쿠알라룸푸르에 둘 것을 採擇한다.
4. 本機構의 本部는 항상 會員國領土內에 位置한다.

第4條 「機構의 會員資格」

1. 會員資格은 ① 輸出國 및 ② 輸入國의 두 部門으로 한다.
2. 理事會는 第24條 및 第27條의 規定을 充分히 考慮하여 本條 第1項에 規定된 會員資格의 區分變更基準을 設定한다. 同基準에 該當되는 會員國은 特別投票에 의해 理事會의 承認을 받으면 資格區分變更가 가능하다.
3. 各契約當事國은 本機構에 있어서 一會員國을 構成한다.

第5條 「政府間機關의 會員資格」

1. 本協定에서 政府(單數 또는 複數)라고 함은 EEC를 包含한 國際協約, 특히 商品協定을 協商, 締結, 適用함에 있어 責任을 질 수 있는 모든 政府間機關(2國間 또는 多數國間)을 包含한다고 解釋한다. 따라서 本協定에서 署名, 批准, 受諾 또는 承認, 適用의 通告, 加入이라 함은 이들 政府間機關에 의한 署名, 批准, 受諾 또는 承認, 適用의 通告, 加入 등을 包含한다고 解釋하여야 한다.
2. 이들 政府間機關自身의 權限範圍內에서 可決되는 問題의 投票에 있어서는 第14條에 의거 同機關의 會員國에 屬하는 總投票數와 同數의 票數로써 이들 機關의 投票權을 行使한다.

第6條 「國際天然卫旱理事會의 構成」

1. 本機構의 最高機關은 國際天然卫旱 理事會이며, 本理事會는 本機構의 全會員國으로 構成된다.
2. 各會員國은 同理事會에 代表者 1名을 派遣하여 自國을 代表하고 또 理事會會議에 參席할 交替代表 또는 顧門團을 選任할 수 있다.
3. 交替代表는 正式代表의 有故時 또는 特殊한 事情下에서 正式代表를 代身하여 行動하고 投票할 權限을 갖는다.

第7條 「理事會의 權限 및 機能」

1. 理事會는 本協定의 規定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모든 權限을行使하고 또 必要한 모든 機能의 運營을 遂行하도록 措置한다.
2. 理事會는 特別投票로 本協定의 規定을 遂行하는 데 必要한 모든 規則을 採擇하고 이를 遵守한다. 이 規則에는 理事會自體運營節次 및 第18條에 規定한 各委員會의 運營節次, 緩衝在庫의 管理 및 運營, 機關의 經理 및 人事規則 등이 包含된다. 理事會는 自體運營節次 規定內에 會議를 召集하지 않고도 決定할 수 있는 特殊한 問題에 관한 節次法을 定할 수 있다.
3. 理事會는 本協定下의 機能遂行을 위해 必要로 하는 記錄을 保管한다.
4. 理事會는 機關의 活動을 記錄한 年次報告書 및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기타 情報를 發行한다.

第7條(附) 「特殊寧態에 있어서의 借入」

1. 支出이 承認되어도 分擔金이 未納인 경우, 理事會는 特別投票에 의해 緩衝在庫費 혹은 經營費의 不足分을 民間으로부터 借入한 借入金으로 處理할 수 있다. 會員國의 分擔金滯納으로 借入이 不得已한 경우, 理事會의 一時拂金은 當該會員國이 分擔金을 完納하고 또 不足殘金을 支拂함으로써 清算된다.
2. 會員國은 그 判斷에 依해 必要資金分擔額을 理事會의 借入金에 依支하지 않고 當該會計에 直接現金으로 支拂할 수 있다.

第8條 「權限의 委任」

1. 理事會는 特別投票를 通해 理事會의 特別投票를 必要로 하지 않는 理事會의 一部 또는 全部의 權限을 第18條 規定에 따라 設立된 他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 이 權限委任에도 不拘하고 理事會는 언제든지 他委員會에 委任된 問題를 討議하고 決定할 수 있다.
2. 理事會는 特別投票로써 他委員會에 委任된 權限을 撤回할 수 있다.

第9條 「他機構와의 協力」

1. 理事會는 國際聯合, 그 機構 및 專門機關, 其他 적절한 政府間機構와의 協力 또는 協議를 위해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할 수 있다.
2. 理事會는 또 적절한 國際民間機構와도 接觸을 유지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第10條 「음서버의 出席許可」

理事會는 非會員國政府 또는 第9條에 記載된 諸機關을 음서버로 招聘하여 理事會 및 第18條에 記載된 委員會의 全會議를 傍聽시킬 수 있다.

第11條 「議長 및 副議長」

1. 理事會는 每年 議長 및 副議長을 選出한다.
2. 議長 및 副議長은 輸出會員國 代表에서 1名, 輸入會員國 代表에서 1名을 選出한다. 議長職과 副議長職은 每年 輸出國側과 輸入國側에서交代로 選出된다. 그러나 特殊狀況下에서 理事會의 特別投票로 議長 및 副議長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再選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3. 議長이 一時的 不在일 경우는 副議長이 代行한다. 議長 및 副議長이 다함께 一時的 有故時 또는 한쪽 및 양쪽이 다 永久的 有故時, 理事會는 그 狀況에 따라 輸出會員國과 輸入會員國 代表 중에서 暫定的 또는 永久의 으로 議長 및 副議長을 새로 選出할 수 있다.

4. 理事會 會議를 司會하는 議長 및 主宰者는 同會議에서 投票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단, 그는 같은 自己出身(輸出 또는 輸入國側) 會員國의 다른 代表者에게 自國의 投票權行使를 代行시킬 수

있다.

第12條 「專務理事, 緩衝在庫管理者 및 職員」

1. 理事會는 特別投票로 專務理事 1名 및 緩衝在庫管理者 1名을 任命한다.
2. 專務理事 및 緩衝在庫管理者의 任期 및 任命條件은 理事會가 決定한다.
3. 專務理事는 本機構의 總轄責任者이며 理事會의 決定에 따른 本協定의 管理 및 運營에 관해 理事會에 責任을 진다.
4. 緩衝在庫管理者는 專務理事 및 理事會에 對해 本協定에서 賦與된 職權 및 理事會決定의 附帶職務를 遂行할 責任을 진다. 또 同管理者는 緩衝在庫의 日常運營에서 責任을 지는 同時に 專務理事가 本協定의 目的達成을 위해 緩衝在庫를 效率적으로 確保할 수 있도록 同在庫의 運用全般에 대해 항상 同專務理事에게 報告한다.

5. 專務理事는 理事會가 定한 規則에 따라 職員을 任命한다. 同職員은 專務理事에 對해 責任을 진다.

6. 專務理事, 緩衝在庫管理者를 包含한 全職員은 고무工業, 貿易, 또는 其他 關聯商業活動에 金錢的인 利害關係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7. 職務遂行에 있어서, 專務理事, 緩衝在庫管理者 및 其他 職員은 理事會 또는 第18條에 의거 設定된 委員會 以外의 어떤 機關이나 어떤 會員國의 指示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면 아니된다. 또 그들은 理事會에 對해서만 責任을 지는 國際機構官吏로서의 地位를 利用하는 어떠한 行動도 삼가해야 한다. 各會員國은 專務理事, 緩衝在庫管理者 및 기타 職員들의 „責任意의 性格임을 尊重하고 그들의 責任을 行使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第13條 「會期」

1. 原則의 으로 理事會는 每年 上下半期에 1회 씩 定期會議를 開催한다.
2. 本協定에 特別히 規定된 條件下에서 開催되는 會議 以外에 理事會의 要請이나 또는 다음과 같은 要請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特別會議

를 召集한다.

- ① 理事會議長
- ② 專務理事
- ③ 輸出會員國의 過半數
- ④ 輸入會員國의 過半數
- ⑤ 200票 以上의 投票權을 가진 輸出會員國
(一國 또는 多數國)
- ⑥ 200票 以上의 投票權을 가진 輸入會員國
(一國 또는 多數國)

3. 會議는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로 定하지 않는 限, 本機構의 本部에서 開催된다. 萬若 어느 會員國의 招請으로 本機構本部外의 다른 곳에서 理事會가 開催될 때, 招請國은 거기에서 發生하는 追加經費를 支拂한다.

4. 會議의 通告 및 議題는 늦어도 30日前에 專務理事가 會員國에 通達하고, 緊急한 경우는 同通知를 늦어도 7日前에 通告한다.

第14條 「投票數配分」

1. 輸出會員國의 總投票數를 1,000票로 하고 輸入會員國의 總投票數도 1,000票로 한다.

2. 各輸出會員國은 上記 1,000票 중 1票를 第1投票權으로 受取한다. 단, 純年間輸出量이 10,000톤 以下인 輸出國은 例外로서 이 第1投票權이 適用되지 않는다. 殘餘票는 票數配分이 있기 6年前부터 起算, 過去 5年間의 輸出會員國의 天然고무 純輸出量에 따라 되도록 正確히 輸出會員國에 比例配分한다. 싱가포르의 純輸出量에는 고무加工品의 輸出量도 包含한다. 단, 同期間中 天然고무 純輸出量은 總輸出量의 13%로 計算된다.

3. 輸入會員國의 票는 票數配分이 있기 4年前부터 起算, 過去 3年間의 各輸入會員國의 天然고무 純輸入量의 平均值에 比例하여 輸入會員國에 配分한다. 단, 純輸入量이 上記 配分式으로는 1票를 받기에 不充分한 輸入會員國의 경우에도 1個國에 대해서 1票는 주어진다.

4. 本條 第2項과 第3項, 輸入會員國의 分擔金에 關한 第27條 第2項과 第3項 및 第38條의 目的을 위하여 理事會는 第1回 會議에서 輸出會員國의 純輸出量 및 輸入會員國의 純輸入量의

一覽表를 設定하고, [本條에] 따라 同表는 每年修正된다.

5. 1票未滿의 端數票는 存在하지 않는다. 本條 第3項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0.5未滿의 端數는 버리고 0.5以上의 端數는 올린다.

6. 理事會는 本條 規定에 따라 每會計年度의 第1次 會議開頭에서 同年度의 票數配分을 한다. 同配分은 本條 第7項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同年度末까지 有效하다.

7. 本機構會員國의 資格變更이 生겼을 경우 또는 本協定의 規定에 따라 投票權이 停止 또는 復活되는 會員國이 있을 경우에는 理事會는 本條規定에 따라 當該部門會員國들내에서 票를 再配分한다.

8. 第64條에 따른 會員國의 除名 또는 第63條나 第62條에 따른 會員國의 脫退로 總貿易去來量이 減少되어 殘留會員國(輸出國, 輸入國不問)의 去來量占有率이 80%未滿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理事會가 會議를 召集하여 本協定의 期間, 條件 및 將來에 대해서 決定하고, 특히 殘留會員國에 不當한 財政負擔을 주지 않고 緩衝在庫를 效率적으로 維持하는 問題도 함께 討議·決定한다.

第15條 「投票節次」

1. 理事會의 各會員國은 理事會內에서 保有하는 票數의 投票權을 行使한다. 단, 持分票를 分割行使할 수는 없다.

2. 理事會議長에게 書面通告로 어느 輸出會員國도 다른 輸出會員國에게 또는 어느 輸入會員國도 다른 輸入會員國에게 理事會의 모든 會議(定期 또는 非定期會議)에서 그 權利를 代表하여 投票權을 行使할 權限을 委任시킬 수 있다.

3. 投票權을 委任 받은 會員國은 委任한 會員國의 投票權을 行使한다.

4. 會員國이 不參한 경우에는 投票權을 行使하지 않을 것으로 看做한다.

第16條 「議決定足數」

1. 理事會의 定期·非定期會議의 定足數는 輸出會員國의 過半數와 輸入會員國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한다. 단, 出席한 輸出會員國과 輸入會員

國의 各投票數가 輸出·輸入各部門 總票數의 3分의 2 以上이어야 한다.

2. 會議當日 및 翌日에 本條 第1項에 規定된足數에 未達한 경우에는, 3日째 또는 그 以後의 議決定足數는 輸出會員國과 輸入會員國의 各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國의 各票數는 輸出·輸入 各部門 總票數의 過半數로 한다.
3.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權利委任은 當日出席으로 看做한다.

第17條 「決議」

1. 理事會의 決議 및 建議는 本協定중에 別途 規定이 없는 限, 配分票의 單純過半數로써 採擇한다.
2. 會員國이 本協定의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委任하고 理事會에서 被委任國이 投票權을 行使했을 때, 그 會員國은 本條 第1項의 目的을 위해 그 會員國은 出席·投票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18條 「委員會의 設立」

1. 다음 各委員會를 設置한다.
 - ① 經營管理委員會
 - ② 緩衝在庫運營委員會
 - ③ 統計委員會
 - ④ 其他 諸問題對策委員會上記委員會外에도 理事會의 特別投票로 委員會를 增設할 수 있다.
2. 各委員會는 理事會에 對해 責任을 진다. 理事會는 特別投票로 各委員會의 構成會員과 委任條件을 決定한다.

第19條 「專門家小委員會」

1. 理事會는 輸出會員國 및 輸入會員國의 고무產業 및 貿易團體로부터 專門家小委員會를 設立할 수 있다.
2. 專門家小委員會는 理事會와 委員會에 對해 특히 緩衝在庫의 運營 및 第43條에 規定된 其他對策 등에 對해 勸告·支援을 할 수 있다.
3. 專門家小委員會의 構成, 機能 및 管理 등諸問題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第20條 「特權 및 免責」

1. 本機構는 法人으로 한다. 따라서 動產, 不動產을 契約하여 取得·處分할 수 있으며, 또 訴訟節次를 取할 수 있는 法定資格을 지닌다.
2. 本機構는 本協定의 發效直後, 機構本部가 設置된 國家政府(以下 主催國政府라 함)와 本機構, 專務理事, 職員 및 專門家, 會員國代表의 地位, 特權, 免責 등 職務遂行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問題에 關한 協定(以下 本部協定이라고 함)을 締結한다.
3. 本部契約未締結中, 本機構는 主催國政府에 對해, 本機構가 職員에게 支拂하는 報酬 및 本機構의 資產, 收入 및 기타 所有物件에 對한 課稅를 同國法의 許容限度內에서 免稅措置하도록 要請한다.
4. 本機構는 本協定의 適切한 機能行使를 위해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1個國 또는 2個國以上的 政府와, 必要한 特權 및 免責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5. 本部를 他國으로 移轉할 경우, 그 나라 政府는 곧 本機構와 本部契約을 締結하고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6. 本部契約은 本協定과 分離된다. 그러나 本部契約은 다음의 경우 效力이喪失된다.
 - ① 主催國政府와 本機構의 合意가 있을 경우
 - ② 本機構의 本部가 主催國政府로부터 他國으로 移轉할 경우
 - ③ 本機構自體가 消滅할 경우

第21條 「財政計定」

1. 本協定의 運營 및 管理上 다음 두가지 計定을 設定한다.
 - ① 緩衝在庫計定
 - ② 經營管理計定
2. 緩衝在庫를 新設, 運營, 維持하는 데 必要한 다음의 모든 收入 및 支出은 緩衝在庫計定에 計上된다.
즉, 第27條에 따른 會員國의 分擔金, 第7條에 따른 緩衝在庫用借入金, 同借入元利金의 債還, 緩衝在庫販賣收入, 緩衝在庫計定의 預金利子,

在庫用買上費, 手數料, 倉庫費, 輸送 및 荷役費, 保險料, 回轉經費. 단, 理事會는 特別投票를 通해 緩衝在庫의 去來나 運營에 屬하는 其他 收入 및 支出도 緩衝在庫計定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本協定의 運營에 관한 모든 기타 收入 및 支出은 經營管理計定에 포함된다. 이려한 支出은 通常 第24條에 의거 算定되는 會員國分擔金으로 充當된다.

4. 本機構는 理事會 또는 第18條에 規定된 기타 委員會에 派遣되는 代表 또는 옵서버의 費用에 對해서도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22條 「拂入方法」

經營管理計定과 緩衝在庫計定에 對한 現金 拂入은 自由로히 使用可能한 通貨나 또는 主要外換市場에서 自由로히 使用可能한 通貨로 交換할 수 있는 通貨로 拂入되어야 하며, 拂入은 外換制限規定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第23條 「會計監查」

1. 理事會는 會計監查를 目的으로 監事を 任命한다.

2. 經營管理計定과 緩衝在庫計定에 대한 別途의 監查報告書는 每會計年度가 終結된 후 早速한 時日內에(단, 3個月 以前에는 아니된다) 各會員國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理事會는 적당한 次期會議에서 審議·檢討하여 承認하여야 한다. 會計監査와 貸借對照表의 概要是 出版 公告되어야 한다.

第24條 「豫算分擔金」

1. 理事會는 本協定이 發效된 후 첫會議에서 發效日부터 會計初年度末까지의 經營管理計定豫算을 承認한다. 其後 理事會는 各會計年度의 下半期에 다음 會計年度의 經營管理計定豫算을 承認한다. 理事會는 또 本條 第2項에 따라 各會員國의 同豫算分擔金을 算定한다.

2. 每會計年度의 經營管理豫算에 대한 各會員國의 分擔金은 當會計年度의 經營管理豫算承認時 全會員國의 總投票數에 대한 各會員國投票數의 比率에 따라 分擔된다. 分擔金算定에 있어

各會員國의 投票數는 他會員國의 投票權行使停止나 이로 因한 投票權再配分 등의 影響을 받지 않는다.

3. 本協定이 發效된 후 加入한 會員國 政府의 最初豫算分擔金은 同會員國의 保有投票數와 當該會計年度의 殘餘期間을 考慮하여 理事會가 決定한다. 단, 他會員國의 算定은 變更되지 않는다.

第25條 「經營管理豫算分擔金의 拂入」

1. 첫 經營管理豫算의 分擔金은 理事會가 第1次會議에서 拂入期日을 定한다. 次回以後의 同分擔金은 每會計年度의 첫 날을 拂入期日로 한다.

本協定發效後에 加入된 會員國政府의 分擔金은 第24條 第3項에 따라 算定하나, 當該會計年度分의 拂入期日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2. 本條 第1項에 의거 經營管理豫算分擔金拂入期日이 지난 후 2個月內에 會員國이 分擔金을 完納하지 않은 경우는 專務理事가 그 會員國에 대해 早速한 拂入을 要求한다. 專務理事의 同要請 以後 2個月內에 同分擔金을 拂入하지 않을 경우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決定을 하지 않는限, 同國의 本機構內에서의 投票權은 理事會에 의해 停止된다. 만약 專務理事의 同要請後 4個月이 지나도 分擔金을拂入하지 않을 경우에는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決定을 하지 않는限 同會員國의 本協定下에서의 모든 權利는 理事會에 의해 停止된다.

3. 分擔金滯納에 대해 理事會는 主催國의 優待金利에 立脚한 拂入期日부터의 利子를 徵收하든가 또는 第7條(附)에 따른 借入의 경우는 一般金利를 適用하여 延滯利子를 徵收하든가 한다.

4. 本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해 權利가 停止된 會員國은 특히 本協定에 따른 分擔金拂入義務는 물론 其他 모든 財政的義務를 遂行할 責任이 계속 남아 있다.

第26條 「緩衝在庫의 規模」

本協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國際緩衝在庫를 設置한다. 緩衝在庫의 規模는 總量 55萬噸이며, 이는 本協定의 價格安定計劃을 위한 唯一한 市場介入手段이 된다. 緩衝在庫는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 ① 通常緩衝在庫 40萬톤
- ② 緊急緩衝在庫 15萬톤

第27條 「緩衝在庫의 財政」

1. 會員國은 第26條에 規定된 55萬톤의 國際緩衝在庫의 總經費를 調達한다.

2. 通常緩衝在庫와 緊急緩衝在庫에 대한 財政은 輸出會員國과 輸入會員國間에 同等하게 分擔한다. 緩衝在庫計定의 分擔金은 本條 第3項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理事會에서 갖는 投票權數에 따라 割當된다.

3. 第14條 第4項에 따라 理事會에서 定한 分擔金一覽表에서, 總純輸入量에 대한 뜻이 總純輸入量의 0.1% 以下인 輸入會員國은 緩衝在庫計定에 다음과 같이 그 分擔金을 支拂한다.

① 總純輸入量에 대한 뜻이 0.1% 以下~0.05% 以上인 경우에는 總純輸入量에서 차지하는 實際 뜻에 따라서 算定된 額數를 分擔한다.

② 總純輸入量에 대한 뜻이 0.05% 以下인 경우에는 總純輸入量의 0.05%의 뜻을 基準으로 하여 策定된 額數를 分擔한다.

4. 40萬톤의 通常緩衝在庫에 대한 總經費는 會員國이 緩衝在庫計定에 現金으로 納入한 分擔金에 依해 調達된다. 同分擔金은 適宜, 當該會員國의 適切한 代理機關에 依해 支拂될 수도 있다.

5. 15萬톤의 緊急緩衝在庫의 總經費는 會員國의 다음과 같은 形態의 分擔金으로 調達된다.

① 理事會가 在庫保證 및 政府保證 혹은 政府事業을 擔保로 民間으로부터 借入한 現金 및 /또는

② 現 金

同分擔金은 適宣, 當該會員國의 適切한 代理機關을 通하여 支拂될 수도 있다.

6. 本條 第5項의 ① 및 ②에서 指한 또는 兩者共用은 各會員國의 自由裁量에 맡긴다. 어느 경우이건 同分擔金現金은 緩衝在庫計定에 預置된다. 第5項 ①의 規定에 따른 借入金의 경우에는, 그 當時의 緩衝在庫의 總價額에 대한 在庫保證價額의 比率이, 當該會員國이 理事會에서 갖는 投票權數의 比率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5

項 ②의 規定에 따라 理事會가 會員國의 民間借款을 代行했을 경우에도 借款으로 發生하는 모든 債務는 當該會員國이 진다.

7. 國際緩衝在庫 55萬톤에 대한 總經費는 緩衝在庫計定에서 支拂되며, 同經費에는 國際緩衝在庫 55萬톤의 求得 및 運營에 所要되는 모든 費用이 包含된다. 本協定附則 C에 表示된 評價額이 緩衝在庫 求得 및 運營의 總所要經費에 未達인 경우에는, 理事會는 會議를 召集하여 不足經費充當에 所要되는 分擔金을 投票數의 比率에 따라 徵收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第28條 「緩衝在庫에 대한 分擔金支拂」

1. 1次分擔金 : 7,000萬 말레이지아 Ringgit에相當하는 1次分擔金은 緩衝在庫計定에 現金으로 支拂한다. 同分擔金은 第27條 第3項을 參照하여, 投票數의 百分比에 따라 全會員國에 割當된다. 本協定이 暫定的으로 發效될 경우, 發效後 18個月間은, 全會員國이 分擔金을 支拂할 用意가 있다는趣旨을 專務理事에게 通知하면 即時同分擔金 支拂을 請求한다. 同 1次分擔金支拂期日은 專務理事의 支拂請求後 45日以內로 한다.

2. 專務理事는 緩衝在庫管理者가 4個月以內에 分擔金이 必要하다고 證明하면 何時라도 追加分擔金을 請求할 수 있다.

3. 分擔金請求가 있을 경우, 會員國은 通告後 30日以內에 支拂하여야 한다. 단, 理事會에서 總 200票에 達하는 投票數를 가진 1國 또 2國以上의 會員國에서 要請이 있을 경우, 理事會는 特別會議를 召集하여 다음 3個月間의 緩衝在庫 運營에 必要한 資金評價에 따라 分擔金支拂請求를 檢討하여 金額을 變更시키든가 또는 請求를 否認할 수 있다. 단, 理事會에서 決議에 達하지 못했을 경우는, 專務理事의 決定에 따라 會員國이 分擔金을 支拂하기로 한다.

4. 通常 및 緊急緩衝在庫를 위해 要求되는 分擔金은 同分擔金 要求當時의 實效下限價格으로 算定한다.

5. 緊急緩衝在庫用 分擔金要求는 다음과 같이 取扱된다.

① 第31條에 規定된 30萬톤의 檢討時에 理事

會는

- ① 第27條에 따라, 各會員國으로부터 緊急緩衝在庫分擔金 支拂方法에 대한 意見書를 받는다.
- ② 緊急緩衝在庫를 早期實現하기 위하여 必要한 모든 財政 및 其他措置를 取한다.
- ③ 第31條 規定에 따른 40萬噸의 檢討時에 理事會는
 - ① 全會員國이 緊急緩衝在庫分擔金의 支拂을 完了하고 또
 - ② 緊急緩衝在庫가 實施되어 第30條의 條件에 따라 發效될 萬般의 措置가 되어 있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29條 「價格範圍」

1. 緩衝在庫運營을 위해 다음과 같이 價格範圍를 設定한다.

- ① 基準價格
- ② 下限介入價格
- ③ 上限介入價格
- ④ 下限發動價格
- ⑤ 上限發動價格
- ⑥ 最低價格
- ⑦ 最高價格

2. 基準價格은 本協定이 發效함과 同時に kg當 210센트(말레이지아, 말레이지아／싱가포르)로 한다. 同價格은 第31條 A節에 따라 檢討 및 改正된다.

3. 上下限介入價格은,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決定을 하지 않는限, 各各 基準價格의 플러스, 마이너스(\pm) 15%로 한다.

4. 上下發動價格은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決定을 하지 않는限, 各各 基準價格의 플러스, 마이너스(\pm) 20%로 한다.

5. 本條 第3項 및 第4項의 價格算出은 小數以下를 四捨五入하여 센트로 表示한다.

6. 本協定에 別途規定이 없는限, 本協定發效後 30個月間, 最低價格은 kg當 150센트(말레이지아, 말레이지아／싱가포르)로 하고 最高價格은 kg當 270센트(同, 同)로 한다.

第30條 「緩衝在庫의 運營」

1. 第29條의 規定된 價格範圍 또는 第31條 및 第39條의 規定에 따라 其後 改正된 價格과 對照하여, 第32條에 規定된 市場指標價格이 :

① 上限發動價格以上일 경우, 緩衝在庫管理者는 市場指標價格이 上限發動價格以下로 下落될 때까지 天然고무를 市場에 放出하여 上限發動價格을擁護한다.

② 上限介入價格을 上廻하는 경우, 緩衝在庫管理者는 上限發動價格을擁護하기 위하여 天然고무를 賣却할 수가 있다.

③ 上下限介入價格과 同額 또는 그 中間價格인 경우, 緩衝在庫管理者는, 第35條에 의해 在庫交替責務를 完遂하기 위한 경우以外에는 天然고무를 賣買하지 않기로 한다.

④ 下限介入價格을 下廻하는 경우, 緩衝在庫管理者는 下限發動價格을擁護하기 위하여 天然고무를 買入할 수 있다.

⑤ 下限發動價格과 同額 또는 그 以下일 경우, 緩衝在庫管理者는 下限發動價格을擁護하기 위하여 市場指標價格이 下限發動價格을 上廻할 때까지 買入한다.

2. 緩衝在庫의 賣却 또는 買入이 40萬噸 水準에 達한 경우, 理事會는 特別投票로 緊急緩衝在庫를 다음 중 어느 價格으로 實施할 것인지를決定한다.

① 下限 또는 上限發動價格 또는

② 下限發動價格과 最低價格사이의 價格, 또는 上限發動價格과 最高價格사이의 價格

3. 本條 第2項에 따라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決定을 하지 않는限, 緩衝在庫管理者는 最低價格을擁護하기 위하여, 市場指標價格이 最低價格과 下限發動價格의 中間值인 時點에서 緊急緩衝在庫를 操作하고, 또 最高價格을擁護하기 위하여, 市場指標價格이 最高價格과 上限發動價格의 中間值인 時點에서 緊急緩衝在庫를 操作한다.

4. 通常緩衝在庫 및 緊急緩衝在庫의 總在庫는 市場指標價格이 最低價格을 下廻하거나 또는 最高價格을 上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充分히

활용되어야 한다.

5. 緩衝在庫管理者에 依한 賣買는 常設民間市場을 통하여 時價대로 하며 또 모든 去來는 現物로 하고 納期는 3個月以内로 한다.

6. 緩衝在庫의 運營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에 따라 理事會는 支部 및 緩衝在庫管理者事務所를 常設고무市場 및 公認倉庫所在地에 設立한다.

7. 緩衝在庫管理者는 緩衝在庫去來 및 緩衝在庫計定의 財政狀態에 관한 月報를 作成한다. 同月報는 每月末後 60日以內에 各會員國에 提供된다.

8. 緩衝在庫去來에 관한 報告에는 모든 緩衝在庫去來에 관한 數量, 價格, 種類, 等級, 市況, 在庫移動 등에 대한 情報가 包含된다. 또 緩衝在庫計定의 財政狀態에 관한 情報에는 預金 및 借入金의 利率, 期間, 條件과 使用通貨 및 第21條 第2項에 規定된 事項에 關聯된 情報도 包含된다.

第31條 「價格範圍의 改正」

A. [基準價格]

1. 基準價格의 檢討 및 改正是 本條 A節에 따라 市場動向 및 緩衝在庫의 在庫量變動에 따라 한다. 理事會는 本協定이 發效된 후 每 18個月마다 基準價格을 再檢討한다.

① 再檢討以前 6個月間의 日日市場指標價格의 平均이 上限介入價格이나 下限介入價格과 同額 또는 그 中間值인 경우에는 基準價格은 改正되지 않는다.

② 再檢討以前 6個月間의 日日市場指標價格의 平均이 下限介入價格 以下일 때는,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의 基準價格引下調整百分比를 決定하지 않는限, 自動的으로 基準價格은 再檢討時의 水準보다 5%引下改正된다.

③ 再檢討以前 6個月間의 日日市場指標價格의 平均이 上限介入價格보다 上廻할 때,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의 基準價格引上調整百分比를 決定하지 않는限, 自動的으로 基準價格은 再檢討時의 水準보다 5%引上改正된다.

2. 本協定發效後 또는 本項規定에 따른 最終評價後 10萬ton의 緩衝在庫 在庫量의 變動이 있을 경우, 專務理事는 그 狀況을 檢討하기 위해 理事會를 特別召集한다. 理事會는 特別投票로 다음 事項들이 包含되는 適切한 對策을 決定할 수 있다.

- ① 緩衝在庫操作의 停止
- ② 緩衝在庫의 賣買率의 變更
- ③ 基準價格의 改正

3. ① 本協定의 發效後, ② 本項規定에 따른 最終改正, ③ 本條 第2項 規定에 따른 最終改正後(以上 三者中 最新 것을 택함) 緩衝在庫의 賣買가 30萬ton에 達하게 되면, 理事會가 特別投票로 別途의 價格百分率을 올리거나 내리기로 하지 않는限, 基準價格을 現行水準보다 3%下落시키거나 또는 上昇시켜야 한다.

4. 어떠한 事由로 因해서도 基準價格의 調整으로 上限 또는 下限發動價格이 最高價格을 上廻하든가 또는 最低價格을 下廻해서는 아니된다.

B. [最高 및 最低價格]

5. 理事會는 特別投票로 本條本節의 規定에 따라 價格再檢討時에 最高 및 最低價格을 改正할 수 있다.

6. 理事會의 最高 및 最低價格改正決定은 반드시 市場動向 및 市況에 對應하게끔 하여야 한다. 이와 關聯, 理事會는 天然고무의 價格, 消費, 供給, 生產費, 在庫量의 變動事項 및 緩衝在庫의 天然고무量과 緩衝在庫計定의 財政狀態 등을 考慮해야 한다.

7. 最高 및 最低價格의 檢討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本協定發效後 每 30個月마다
- ② 特別한 경우, 理事會에서 投票權數 200票以上을 가진 會員國(單數 또는 複數)의 要請이 있을 때
- ③ 基準價格이 다음과 같이 改正되었을 때
 - ① 本協定發效後 또는 最低價格의 最終改正後 基準價格이 本條 第3項에 따라 3%以上, 本條 第1項에 따라 5%以上, 本條 第1項, 第2項 및/또는 第3項에 따른 比率以上으로 引下되었을 때,

⑪ 本協定發效後 또는 最高價格의 最終改正後 基準價格이 本條 第3項에 따라 3%以上, 本條 第1項에 따라 5%以上, 本條 第1項, 第2項 및/또는 第3項에 따른 比率以上으로 引上되었을 때,

단, 基準價格의 最終改正後 60日間의 日日市場指標價格의 平均 이 下限介入價格 以下이거나 또는 上限介入價格 以上인 경우에 限한다.

8. 本條 第5項, 第6項, 第7項의 規定에 구애없이 本條規定에 따른 價格範圍檢討前 6個月間의 日日市場指標價格의 平均이 基準價格를 下迴할 경우에는 最高 및 最低價格을 引上改正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本條規定에 따른 價格範圍檢討前 6個月間의 日日市場指標價格의 平均이 基準價格를 上迴할 경우에는 最高 및 最低價格을 引下改正해서는 아니된다.

第32條 「市場指標價格」

1.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런던, 뉴욕의 天然고무市場에서의 該當月 日日公認價格의 複合加重平均值를, 天然고무市場을 反映하는 日日市場指標價格으로 設定한다. 當初 日日市場指標價格은 RSS 1, RSS 3, 및 TSR 20으로 構成되어야 하며 또 이를 加重值는 모두 같아야 한다. 모든 價格評價는 싱가포르港, 말레이지아港 本船引渡價格(FOB)으로 하되, 말레이지아／싱가포르通貨, 또는 말레이지아通貨로 換算한다.

2. 類型 및 等級의 複合, 加重과 日日市場指標價格의 計算法은, 天然고무市況을 잘 反映시키기 위하여 理事會가 再檢討하고, 特別投票로 그것을 變更할 수 있다.

3. 市場指標價格은, 最終 5日間(市場日)의 日日市場指標價格의 平均值가 本協定에서 規定된 價格水準보다 「높다, 같다, 낮다」할 때에는 本協定에서 規定된 價格보다 「높다, 같다, 낮다」로 認定한다.

第33條 「在庫의 構成」

1. 本協定發效後 첫 會議에서 理事會는 緩衝在庫에 包含시키기 위한 Ribbed Smoked Sheet (RSS)와 技術的規格으로 等級分類된 고무(TSR)

의 國際標準等級 및 類型을 指定 한다. 단, 이것은 다음 規準에 合當하여야 한다.

① 緩衝在庫用으로 認定되는 天然고무의 最低等級과 類型은 RSS 3 및 TSR 20이다.

② 本項 ①에서 認定된 모든 等級 및 類型으로서, 前曆年度 天然고무 國際貿易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最低 3%에 該當되는 것을 指定한다.

2. 市況의 推移를 緩衝在庫構成에 反映시켜, 本協定의 目的인 安定供給을 確保하고 在庫고무의 優良品質을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하다면, 理事會는 特別投票로 이를 基準 및/또는 指定된 類型, 等級을 變更할 수 있다.

3. 緩衝在庫管理者는 本協定의 安定供給目的을 推進하는 한편 緩衝在庫의 構成物이 天然고무의 輸出入 폐頓에 맞도록 努力해야 한다.

4. 理事會는 價格安定上 必要하다면 緩衝在庫管理者에게 緩衝在庫構成物을 바꾸도록 指示할 수 있다.

第34條 「緩衝在庫의 設置場所」

1. 緩衝在庫는 經濟의이면서도 商業活動에 有利한 地點에 設置한다. 이 原則에 따라 緩衝在庫는 輸出 및 輸入會員國雙方의 領土內에 設置한다. 會員國間의 緩衝在庫配分은 經費를 最小限으로 줄이는 한편, 本協定의 目的인 安定供給이 確保되어도록 效果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緩衝在庫는 高水準의 品質을 維持하기 위해 理事會에서 決定한 基準에 따라 認定되는 倉庫에만 保管되어야 한다.

3. 本協定의 發效後 理事會는 承認된 倉庫의 名單을 作成하고 그 倉庫使用에 必要한 措置를 한다. 理事會는 同名單을 定期的으로 再檢討한다.

4. 理事會는 또한 緩衝在庫의 設置場所에 대해서도 定期的으로 再檢討하여 經濟의이면서도 效果的인 商業活動을 위하여, 必要時에는 特別投票로 緩衝在庫管理者에게 緩衝在庫設置場所의 變更를 指示할 수 있다.

.....<다음 3~4月號에 계속>